##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과정

O 제출일자 : 2021. 3. 11.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
O 회부일자 : 2021. 3. 12.

O 상정일자 :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3. 23.) 상정 · 의결

#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총무과장 황 두 철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"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" 를 정비하여 상·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(안 제17조제3항)
- 띄어쓰기 오류 수정(안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6조제3항, 제17조, 제23조, 제24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특정 성비가 60%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참여율을 높이고,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